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 의 자 :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병기, 정윤주

1. 제안이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나. 임신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별표 1 비고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교통지도과

라. 입법예고 : 2024. 8. 22. ~ 2024.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①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제4호 중 “징수방법”을 “징수방법, 이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신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①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u> <u>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u>

[별표 1] <개정 2023.10.05>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한다. 단 할인혜택 차량의 경우 당일 발생한 총 시간 주차요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

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2) 구청장이 주차수요억제 등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마. 5급지

1)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2) 1~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이용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나. 자원봉사증을 미지참한 사람 및 자원봉사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당일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 참여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이용 시 한 차례만 요금을 할인하되, 할인요금은 2,000원까지로 한다.(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23.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거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